

코로나19 역학조사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의안 번호	제 45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10. 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상정이유

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로 역학조사팀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및 기존 인력의 인건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지급하고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근거: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

나. 사업 개요

- 1) 사업기간: 2022. 1. ~ 2022. 12.
- 2) 사업내용: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
- 3) 근로형태: 기간제근로자
- 4) 예 산 액: 90,000천원

(단위: 천원)

구 분	금 액	산 출 내 역	집행률
합계	90,000		
인건비	90,000	- 역학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(신규채용) : 3,000천원 × 22명 × 1월(8월분) = 66,000천원 - 역학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(기존8명) : 3,000천원 × 8명 × 1월(8월분) = 24,000천원	100%

다. 예비비 사용 이유

-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역학조사 인력 충원 및 기존 근무중인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(1개월)을 예비비로 사용
- ※ 9월~12월분 인건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

3. 추진경과

- 2022년 코로나19 예비비 사용계획: 2022. 7. 14.
-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: 2022. 7. 15.
- 예비비 배정(기획예산과): 2022. 8. 8.

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의안 번호	제 45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10. 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상정이유

8.8.~8.17.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주택 등에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고 사용내역을 보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관련근거

- 1) 도시안전과-19150(2022.09.02.) 「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주택 등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계획」 (【당초】 국:시:구비=70:12:18)
- 2)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-35378(2022.10.05.) 「8월 풍수해 피해 재난 지원금 교부금 재원 변경 조치 요청」 (【변경】 국:시:구비=80:8:12)

나. 총사업비: 8,291,000천원

(국비 6,632,800천원, 시비 663,280천원, 구비 994,920천원)

다. 사업내용: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주택 피해 가구에 재난지원금 200만원 지급
(소유자가 수리한 경우, 세입자와 소유자 각각 1/2씩 지급)

3. 추진경과

가. 침수주택 재난지원금(예비비) 집행 현황

(2022.10.17. 현재)

예산액	집행액	집행률	비고
1,477,080천 원	916,560천 원	62%	변경된 사업예산 (구비 994,920천원) 대비 92.12% 집행

나. 향후 계획: 미합의건 및 계좌오류자 등 추가 조사 후 지급 예정

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의안 번호	제 45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10. 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상정이유

집중호우('22.8.8.~8.17.)로 인해 피해 입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생계 회복을 지원해 주고자 예비비를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근거

- 1)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
- 2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, 제66조
- 3)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(재난지원금의 지원 등)
- 4)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
- 5)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」 제2조, 제5조, 제6조
- 6)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」 제9조(소상공인의 보호 등)

나. 사업 개요

- 1) 사 업 기 간: 2022. 8. 8. ~ 9. 8.
- 2) 지 원 대 상: 집중호우('22.8.8.~8.17.)로 침수 피해 입은 소상공인
- 3) 지 원 내 용: 침수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(857개소)에게 긴급복구비 지급

☐ 침수피해 소상공인 지원금: 1개소당 총 500만원 지원

구 분	집 행 액(천원)	1개소당 지원금액(천원)
합계	4,285,000	5,000
긴급복구비(시비)	1,714,000	2,000
중앙정부지원금(국사구비 매칭)	1,714,000	2,000
서울시지원금(시비)	857,000	1,000

4) 집 행 액: 205,680천원

☐ 중앙정부지원금(국사구비 매칭) 집행내역

구 분	집 행 액(천원)	매칭비율(%)
국비	1,371,200	80
시비	137,120	8
구비	205,680	12

*중앙정부지원금 2,000천원 중 구비 12% (국:시:구=80:8:12)

다. 사업 추진 결과

- 1) 집중호우('22.8.8.~8.17.)로 인해 피해 입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여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회복 지원 및 경영정상화를 도모코자 사업비 205,680천원을 집행

3. 추진경과

가. 사업 실시: 2022. 8. 8. ~ 9. 8.

나. 사업 결과: 대상업체 857개소, 총 205,680천원 지급 완료